

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번호	2050
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1. 2. 8.

제 출 자 : 금 천 구 청 장

1. 제안이유

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상품권 발행 및 이용활성화 조치(안 제4조 ~ 제6조)
- 다. 판매대행점·운영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(안 제7조)
- 라.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, 환수 조치(안 제8조 ~ 제9조)
- 마. 과태료 부과사항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4항, 제6조제1항~제3항, 제7조제1항, 제7조제2항제3호, 제7조제4항, 제8조제2항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합 의: 해당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12. 28. ~ 2021. 1. 18.) : 의견없음
- 2) 비용추계서: 별도첨부
- 3) 규제심사 : 원안동의(기획예산과)
- 4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(민원감사담당관)
- 5) 성별영향평가: 원안동의(여성가족과)

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,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지역사랑상품권인 금천G밸리사랑상품권을 발행 및 운영함으로써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운영대행사”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과 협약을 체결하여 금천G밸리사랑상품권(이하 “상품권”이라 한다)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.

제3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상품권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4조(상품권의 발행) ① 구청장은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단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③ 상품권의 유통지역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일원으로 한다. 단,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의 종류와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상품권의 종류: 선불전자지급수단(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의 종류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)

2. 상품권의 권면금액: 1만원권, 5만원권, 10만원권(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)

제5조(상품권 이용 활성화 조치)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, 구 소속 공무원, 구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시상금, 맞춤형 복지 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상품권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사(축제를 포함한다) 개최 시 상품권을 경품으로 제공하는 등 홍보에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사업 및 지원)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상품권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업

2.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업

3. 상품권 보급 및 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·개발 사업

4.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·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·관리 사업

5. 그 밖에 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- ② 구청장은 상품권 사용자에게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판매를 할 수 있고, 추가충전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거나 법 제7조에 따른 가맹점에게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③ 구청장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시 구매한도 설정, 가맹업종 제한, 결제 수단 설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.

- 제7조(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협약 및 관리)** ① 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판매·충전·환전을 대행하게 하거나,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운영대행사를 선정하여 상품권의 발행·유통·시스템 관리 및 운영, 유지보수 또는 가맹점 등록 등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③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대행사는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“령”이라 한다) 제3조에 따라 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할인비율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이에 응하여야 한다.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, 잔액환급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제8조(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)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,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운영하는 경우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자가 아닌 경우
3. 「식품위생법 시행령」 제21조제8호다목의 단란주점 및 같은 조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경우
4.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 및 같은 조 제4호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경우
5.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

③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.

④ 가맹점이 그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가맹점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.

제9조(환수 조치) 구청장은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품권 할인액 등 부당이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.

1. 가맹점이 법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2. 사용자가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

제10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·징수할 수 있다.

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에, 과태료의 부과·징수 절차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가맹점을 등록한 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등록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의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과 운영대행사 협약을 한 것으로 본다.

서울특별시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

-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할인보전금 및 수수료 발생
 - 이용자 할인비용 보전(안 제6조제2항)
 - 발행 수수료발생 비용(안 제7조제1항)

2. 비용추계의 전제

- 발행액 연 30,000백만원 발행
-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으로 함
- 국비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방침에 따라 2021년만 한시적으로 지원이 결정된 사항임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추계기간에는 국비지원을 배제
- 물가상승률은 배제함

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추계안 : 할인보전금 5% 구 부담 시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세입	○ 시보조금	1,830	1,830	1,830	1,830	1,830	9,150
	소계(a)	1,830	1,830	1,830	1,830	1,830	9,150
세출	○ 할인보전금	3,330	3,330	3,330	3,330	3,330	16,650
	소계(b)	3,330	3,330	3,330	3,330	3,330	16,650
□ 총 비용(a-b)		-1,500	-1,500	-1,500	-1,500	-1,500	-7,500

4. 재원조달 방안

- 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할인보전금 구비부담분 예산편성 필요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	연도					합계
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
시비		1,830	1,830	1,830	1,830	1,830	9,150
구비	자체재원	1,500	1,500	1,500	1,500	1,500	7,500

5. 작성자: 지역경제과 김한아 (02-2627-1302)

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-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판매 (300억원 발행, 10% 할인판매)
 - 이용자 할인 보전 : 시비 / 구비, 5 : 5 매칭
 - 판매대행, 운영대행 발행수수료 : 발행액의 1.1% 발생(시비 소요)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산출예산	시비	구비
할인보전료	3,000	1,500	1,500
발행수수료	330	330	-
총계	3,330	1,830	1,500

III 참고사항

- 2021년 금천G밸리사랑상품권 발행액과 재원별 소요예산
 - 발행액: 2021년 39,000백만원 발행
 - 발행액 증액의 사유 : 국비지원을 받으면서, 발행액 확대
 - 소요예산 : 총 4,339백만원 (국비 1,560/시비 2,184/ 구비 595)
 - 할인율 : 10% (국비 4%, 시비 4.5%, 구비 1.5%)

관계법령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

제4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 등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.

③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 지역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. 다만,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통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, 권면금액,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6조(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) ①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.

③ 판매대행점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량, 재고량, 회수량 등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가맹점의 등록) ①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.

1. 「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」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

3. 이 법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.

④ 가맹점의 자격 요건, 등록 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8조(가맹점 등록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.
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
2.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
3.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5조(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판매·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.

③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제16조(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조성·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제18조(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

제5조(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) ① 국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지침 수립,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실시,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특별시·광역시·도(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)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)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홍보 및 적정 유통을 위한 현황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,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·할인·판매·환전 및 홍보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